

#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69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 이유

「민법」 개정('13.7.1.)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 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난 '15.12.10. 조례를 개정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나,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시행 전 ('13.7.1.) 금치산·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※ 행정자치부 법령부적합 기획정비과제(전국689건)

## 2. 주요내용

가.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함(안 조례 제2297호 부칙 제2조)

-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※ 민법(법률 제10429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민법」 부칙<법률 제10429호, 개정 2011.3.7. 시행 2013.7.1.>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4. 18.~4. 30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정비대상(23): 정비완료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 조례 제2297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**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칙(조례 제2297호, 일부개정 '15.12.10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부칙(조례 제2297호, 일부개정 '15.12.10) 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</u> <u>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.</u></p>